

향 화 도 항 건 설 공 사
〔 공 유 수 면 매 립 기 본 계 획 〕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3. 03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1.1.1 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향화도항은 함평만 입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도서 지역과의 중요 연결 항로로 어항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향화도항 내 외곽시설 및 접안시설 등을 증축하여 부족한 어항기능시설과 관광객 등의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림 1.1-1) 위치도

1.1.3 계획의 역할 및 필요성

- 향화도항이 서해 중남부권 해상교통·관광·레저 중심 어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음

1.2 계획의 추진근거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1 계획의 추진근거

- "국가어항개발계획(향화도항)"은 「어촌·어항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어항개발 계획 중 어항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개발계획임
-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매립면적 12,535m²)을 수반하고 있음

〈표 1.2-1〉 어항개발계획 수립의 근거법률

구분	내용
어촌·어항법	<p>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 상태 등을 조사·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u>어항시설기본계획</u> 2.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등 <u>어항정비계획</u> 3.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u>어항환경개선계획</u> <p>③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④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 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표 1.2-1 계속〉 어항개발계획 수립의 근거법률

구분	내용
어촌·어항법	<p>제21조(어 항 개 발 계 획 수 립 등 의 협 의) ① 지 정 권 자 는 <u>어 항 개 발 계 획 을 수 립 하 거 나 변 경 하 려 면 미 리 관 계 행 정 기관 의 장 및 시 · 도지사 와 협 의 하여 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u>어 항 개 발 계 획 의 수 립 · 변 경에 관 하여 고 시 한 경 우</u>, 제21조제1항에 따라 <u>관 계 행 정 기관 의 장 및 시 · 도지사 와 협 의 를 거 친 사 항에 대 하여</u>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u>매립기본계획 을 수 립 하 거 나 변 경 하여 같 은 법 제26조에 따 라 고 시 한 것 으로 본다</u>.</p> <p>제33조(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u>매립기본계획 을 수 립 할 때</u>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u>도시 · 군 관리계획 을 결정 할 때</u>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u>산업단지를 지정 할 때</u>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 · 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자료 : 「어촌·어항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33조

- 「어촌·어항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수립·고시” 한 경우, 「어촌·어항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7조의 “매립기본계획(변경) 수립·고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어촌·어항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어항구역에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의 "비고"란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어촌·어항법」 제22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기 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고시"하여야 함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 시기
차. 개간·공유 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비고)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2]

〈표 1.2-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한다.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자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2조

1.3 계획의 내용

1.3.1 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가.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국가어항인 향화도항 내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등을 증축하여 항내 정온도 및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이용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어항개발계획 수립

나. 계획의 추진전략

- 해상교통·관광·레저 중심 어항으로 개발하는 종합계획 수립
- 관광여객, 유어선, 어선수용시설 규모산정을 위한 수요 예측
- 시설용도, 항내정온도, 어항시설의 개발계획, 친수공간 확보 등을 고려한 평면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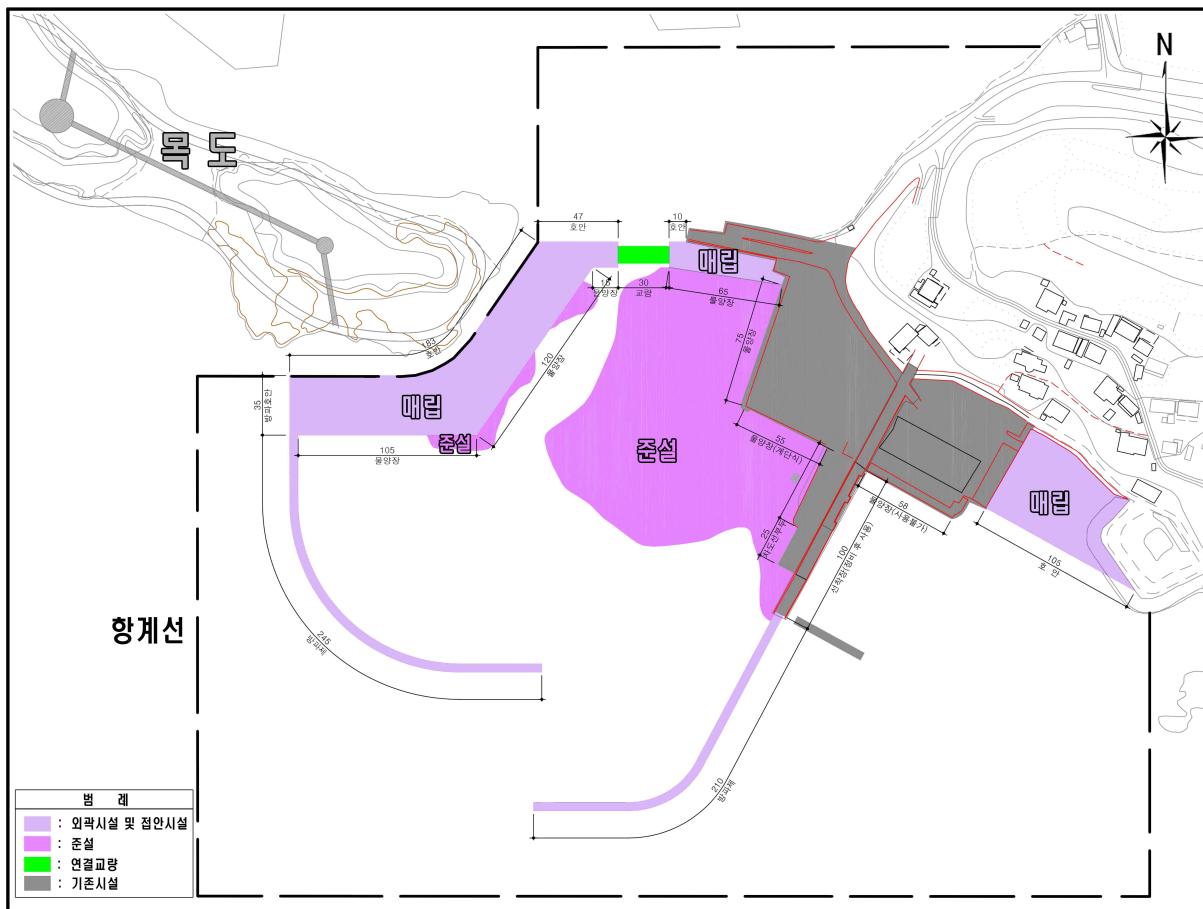
1.3.2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명	향화도항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사업시행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계획수립자 및 승인기관	해양수산부			협의기관	환경부				
계획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항 일원								
계획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5년)								
계획예산	약 48,838백만원								
계획규모	외곽시설	접안시설	공유수면 매립	준설	기타				
	835m	305m	12,535m ²	40,950m ³	연결교량	30m			
계획입지	구 분	항 종	위 치	면적(m ²)	지정일	고시번호			
육 역	국가어항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4,173.3	2021.09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73호				
	국가어항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93,100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07. 29 : 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향화도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21. 09. 01 : 국가어항(향화도항) 지정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73호) ○ 2022. 06. 29 : 향화도항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22. 07. 21 :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신문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1.3.3 계획의 규모

〈표 1.3-1〉 계획의 세부 규모

구분	계획규모			비고
	연장(m)	면적(m^2)	용량(m^3)	
외곽시설	방파제	455	-	-
	호안	380	-	-
접안시설	물양장	305	-	-
	매립	-	12,535	63,509
	준설	-	19,320	40,950
	연결교량	30	-	-
	부대공	1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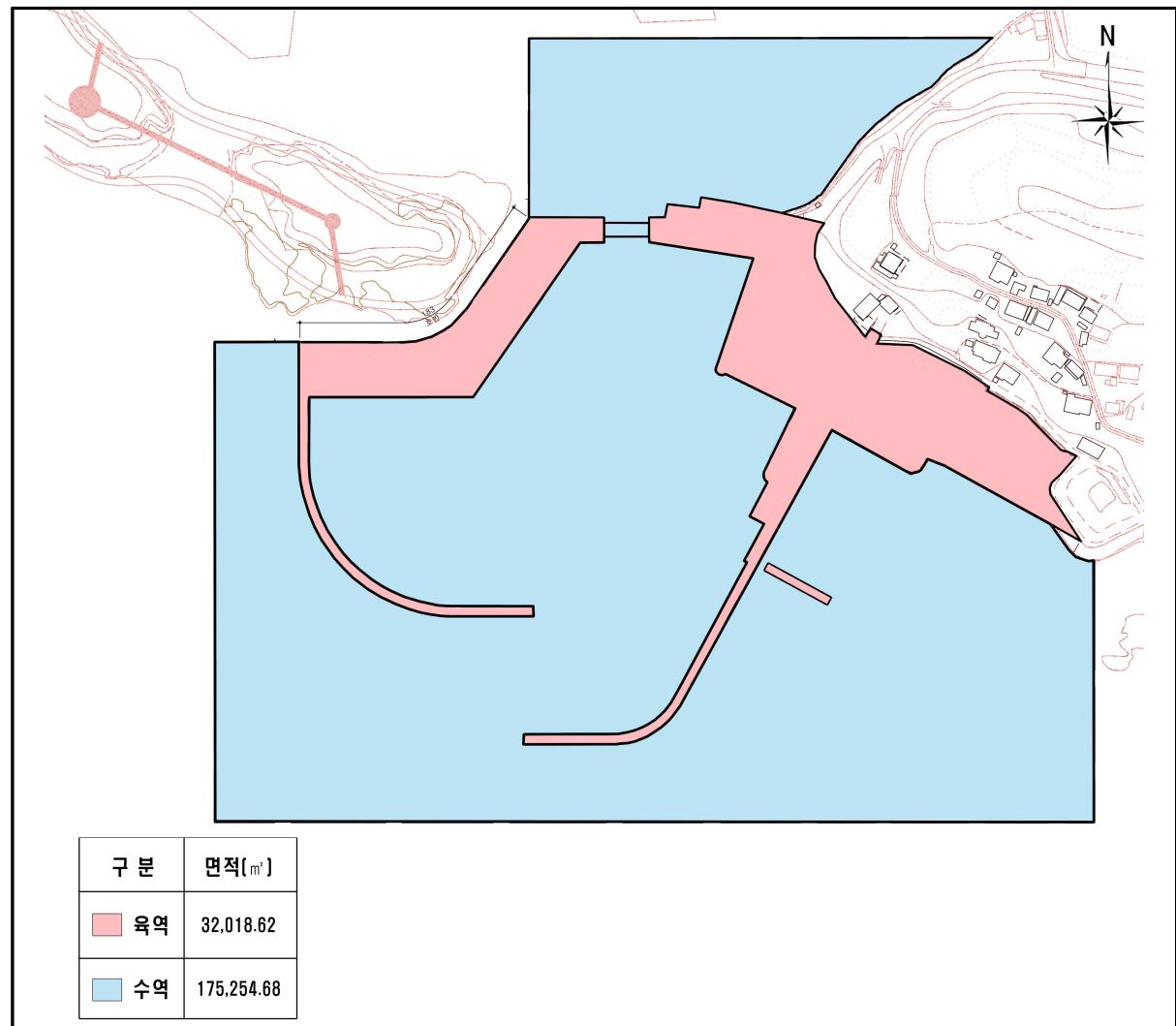
1.3.4 어항구역

나. 어항면적 변경(안)

- “국가어항(향화도항)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73호)”시 육역 $14,173.30\text{m}^2$, 수역 193,100.00으로 반영되었으나, 본 사업시행(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라 육역 $32,018.62\text{m}^2$, 수역 175,254.68으로 변경이 예상됨

〈표 1.3-1〉 향화도항 어항구역(변경)

구분	기정(m^2)		변경(안)(m^2)	
	육역	수역	육역	수역
향화도항	14,173.30	193,100.00	32,018.62	175,254.68



(그림 1.3-2) 어항구역도 변경(안)

제 2 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본 계획시행에 따라 평가항목별 환경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기질,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소음·진동 등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가. 대기질

- 대기질 항목의 환경보전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2.1-1〉 대기환경기준

항 목	구 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대기환경보전목표
아황산가스 (SO ₂)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 ₂)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시간 평균치	50 $\mu\text{g}/\text{m}^3$ 이하	50 $\mu\text{g}/\text{m}^3$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mu\text{g}/\text{m}^3$ 이하	100 $\mu\text{g}/\text{m}^3$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mu\text{g}/\text{m}^3$ 이하	15 $\mu\text{g}/\text{m}^3$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mu\text{g}/\text{m}^3$ 이하	35 $\mu\text{g}/\text{m}^3$ 이하
오존 (O ₃)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0.1ppm 이하
납 (Pb)	연간 평균치	0.5 $\mu\text{g}/\text{m}^3$ 이하	0.5 $\mu\text{g}/\text{m}^3$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5 $\mu\text{g}/\text{m}^3$ 이하	5 $\mu\text{g}/\text{m}^3$ 이하

주)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μ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μ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대기환경기준, 2020.05.12

나. 해양수질 및 퇴적물

- 해양수질 항목의 환경보전목표는 해양환경기준 중 수질평가지수를 적용하였으며, 해양 퇴적물 항목은 유기물 오염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를 적용하였음

〈표 2.1-2〉 해양환경기준

1.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급	수질평가 지수값(Water Quality Index)
I (매우좋음)	23 이하
II(좋음)	24 - 33
III(보통)	34 - 46
IV(나쁨)	47 - 59
V(아주나쁨)	60 이상

가.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
수질평가지수(WQI)
= $10 \times [\text{저층산소포화도}(DO)] + 6 \times [(\text{식물플랑크톤 농도}(Chl-a) + \text{투명도}(SD))/2]$ + $4 \times [(\text{용존무기질소 농도}(DIN) + \text{용존무기인 농도}(DIP))/2]$

나.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항목별 점수	대상항목	
	Chl-a ($\mu\text{g}/\text{L}$), DIN($\mu\text{g}/\text{L}$), DIP($\mu\text{g}/\text{L}$)	DO(포화도, %), SD(m)
1	기준값 이하	기준값 이상
2	< 기준값 + 0.10 × 기준값	> 기준값 - 0.10 × 기준값
3	< 기준값 + 0.25 × 기준값	> 기준값 - 0.25 × 기준값
4	< 기준값 + 0.50 × 기준값	> 기준값 - 0.50 × 기준값
5	≥ 기준값 + 0.50 × 기준값	≤ 기준값 - 0.50 × 기준값

주)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

나.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대상항목 생태구역	Chl-a ($\mu\text{g}/\text{L}$)	저층 DO (포화도, %)	표층 DIN ($\mu\text{g}/\text{L}$)	표층 DIP ($\mu\text{g}/\text{L}$)	투명도 (m)
동해	2.1	90	140	20	8.5
대한해협	6.3		220	35	2.5
서남해역	3.7		230	25	0.5
서해중부	2.2		425	30	1.0
제주	1.6		165	1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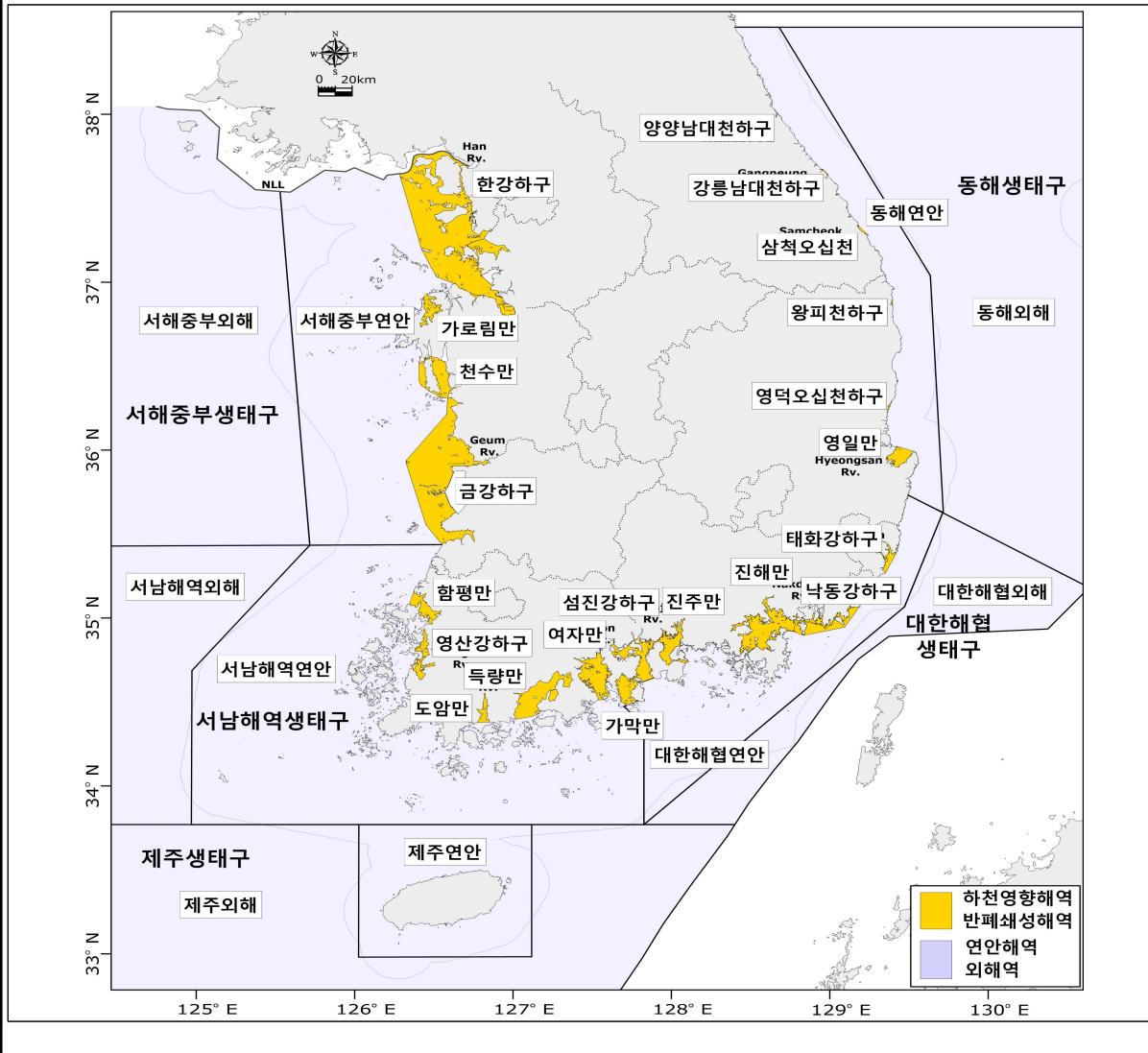
주) 저층 : 해저 바닥으로부터 최대 1m 이내의 수층

〈표 2.1-2 계속〉 해양환경기준

2. 해역별 해양환경기준(해수 수질)

수질목표(WQI)	적용해역	비고
I 등급	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가막만, 섬진강하구, 낙동강하구, 태화강하구, 서해중부외해, <u>서남해역연안</u> , 서남해역외해, 제주연안, 제주외해, 대한해협연안, 대한해협외해, 동해연안, 동해외해	16개
II 등급	한강하구, 가로림만, 천수만, 금강하구, 영산강하구, 여자만, 진주만, 진해만, 영일만, 영덕오십천하구, 왕피천하구, 삼척오십천하구, 강릉남대천하구, 양양남대천하구, 서해중부연안	15개
III등급	-	-
IV등급	-	-
V등급	-	-

3. 해역구분도



〈표 2.1-2 계속〉 해양환경기준

4. 해역구분표

생태구역명	해역명	해역범위
서남해역 생태구	서남해역 연안	전북 고창군 해리면(35° 30' 16" N, 126° 28' 22" E), 서남해역 연안과 서해중부연안 경계(35° 28' 47" N, 125° 36' 38" E), 서남해역의 12해리영해 인근(34° 42' 31" N, 124° 52' 55" E), 서남해역연안과 제주외해의 서측 경계(33° 47' 24" N, 124° 55' 22" E), 서남해역연안과 제주외해의 동측 경계(33° 51' 7" N, 127° 48' 45" E),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34° 24' 30" N, 127° 48' 17" E)를 연결한 해면

자료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0호

〈표 2.1-3〉 해양퇴적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정화지수(CI: Cleanup Index)”란 정화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척도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다.

나.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CIET) : 부영양화 물질에 의한 해양퇴적물의 오염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별표 2에서 규정된 부영양화 관련 항목들로부터 산출된 정화지수

제6조(정화 범위의 설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화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유해화학물질 영향에 따른 정화 범위 및 부영양화 영향에 따른 정화 범위를 구분하여 설정한다.

⑤ 부영양화물질 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농도는 별표2와 같다.

⑥ 부영양화물질 관련 정화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라 부영양화물질 평가항목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를 합산한 값(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CIET)이 6 이상인 구역으로 한다.

[별표2] 부영양화 관련 평가항목, 기준농도 및 평가점수

항목	단위	기준농도	평가점수
강열감량(IL)	% (건중량)	5 미만	0
		15미만	3
		15 이상	6
화학적산소요구량(COD)	mg/g (건중량)	13 미만	0
		20 미만	1
		30 미만	2
		40 미만	4
		40 미만	6
산화발성황화물(AVS)	mg/g (건중량)	0.6 미만	0
		1 미만	1
		5 미만	2
		10 미만	4
		10 이상	6

비고 : 부영양화 관련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평가 점수는 해저퇴적물 시료에서 구한 항목들의 분석치로부터 기준 농도 구간별 설정된 수치로 한다.

자료 :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79호

다. 소음·진동

- 소음·진동 항목의 환경보전목표는 계획지구 주변의 소음기준 유지 및 공사시 소음·진동 기준 이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활소음 규제 기준,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제시하였음

〈표 2.1-4〉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 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주)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홍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자료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1.생활소음 진동기준, 2019.12.31

〈표 2.1-5〉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소음원	시간별	주간 (06:00 ~ 22:00)	심야 (22:00 ~ 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이하	65이하	

- 주)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자료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2.생활진동 규제기준, 2019.12.31

제 3 장 대상지역 설정

3.1 개발계획의 대상지역

- 본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구역을 공간범위로 설정하였음

3.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07, 환경부」를 기초로 「환경 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0.12.22, 환경부고시 제 2020-289호」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2013.01.01,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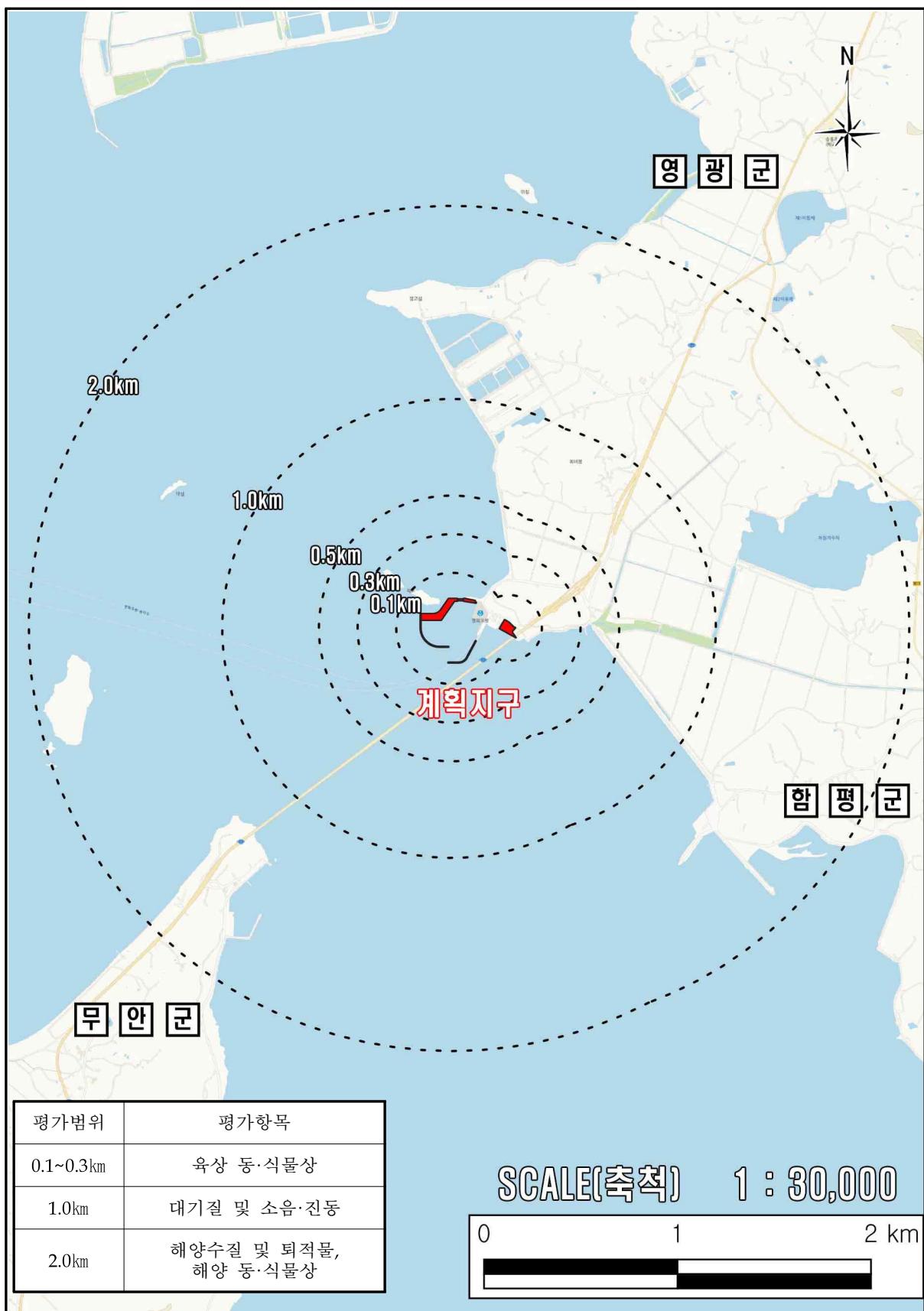
〈표 3.2-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상위 및 관련 계획 포함여부와 기본 방향 부합성 확보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비교 및 대안별 비교·분석을 통한 계획수립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육상 동·식물상	계획지구 경계기준 0.1~0.3km	○ 계획수립에 따른 육상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해양 동·식물상	계획지구 경계기준 2.0km	○ 계획수립에 따른 해양동·식물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수립시 조간대, 갯벌, 해안선 등의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지형변화 및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해양물리	계획지구 경계기준 2.0km	○ 해수유동, 침식 및 퇴적변화 등으로 해양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해양수질 및 퇴적물		○ 계획수립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표 3.2-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기상	계획지구 인근기상대 ○ 계획지구와 가장 인접하여 위치한 영광기상관측소
		대기질 (악취 포함)	계획지구 경계기준 1.0km ○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진동	계획지구 경계기준 1.0km ○ 건설장비 가동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 일부 및 장비로 인한 오수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인부 및 공사장비로 인한 각종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온실가스	○ 장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사회·경제 환경파의 조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산업	○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주) 1. 육상 동·식물상의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0.12.22.,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및 인근에 위치한 목도를 고려하여 영향범위를 설정하였음
 2. 해양환경의 대상지역 설정은 「국가어항 신규지정 대상항(향화도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21.07.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부유사화산 수치모형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2.0km로 영향범위를 설정하였음
 3. 대기질 및 소음·진동의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2013.01.01,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및 지역적 정온시설 위치 등을 고려하여 영향범위를 설정하였음



(그림 3.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제 4 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4.1 평가항목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에 제시된 평가항목 중 본 계획의 특성, 주변지역의 환경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4.1-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연·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표 4.1-2〉 평가항목 선정

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설정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필요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안의 설정 및 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 평가 필요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육상 동·식물상 해양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자산 및 각종 보호구역 분포 파악 ○ 계획수립으로 인한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검토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지질 현황 및 입지 여건 파악 ○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변화 검토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자원 및 자연경관 현황 파악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4) 수환경 보전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조류, 해양수질, 퇴적물 등) 현황 파악 ○ 항만시설물 설치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및 부유사화산 영향 검토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대기질 (악취 포함)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악취 포함), 소음·진동 환경현황 파악 ○ 타 항목의 기초자료(기상)로 제공 ○ 계획수립에 따른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영향 검토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폐기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 각종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검토
다. 사회·경제환경 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4.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수립에 따른 제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 사용된 평가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음

〈표 4.2-1〉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분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범위 선정사유	평가방법	비고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영향 범위	○ 상위 행정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영향 범위	○ 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검토	○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대안
입지의 타당성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육상 0.1~0.3km, 해양 2.0km	○ 공사중 부유사 등 오염물질 발생 ○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생태계 변화	○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현황 및 계획수립으로 인한 영향 예측	○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지형 변화	○ 지형 및 지질 현황 조사 ○ 지형변화 및 지반안정성 검토 ○ 재료원 수급계획 검토	○ 지형·지질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경관 변화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영향 검토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 경관
	○ 수환경의 보전	계획지구 및 주변해역 반경 2.0km	○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 ○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해수 유동 및 침·퇴적변화	○ 공사 및 운영시 오수 및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해양수질·저질 현황 조사 ○ 해수유동, 침·퇴적변화 등의 예측	○ 수질 ○ 해양환경 (해양물리, 해양수질·저질)

〈표 4.2-1 계속〉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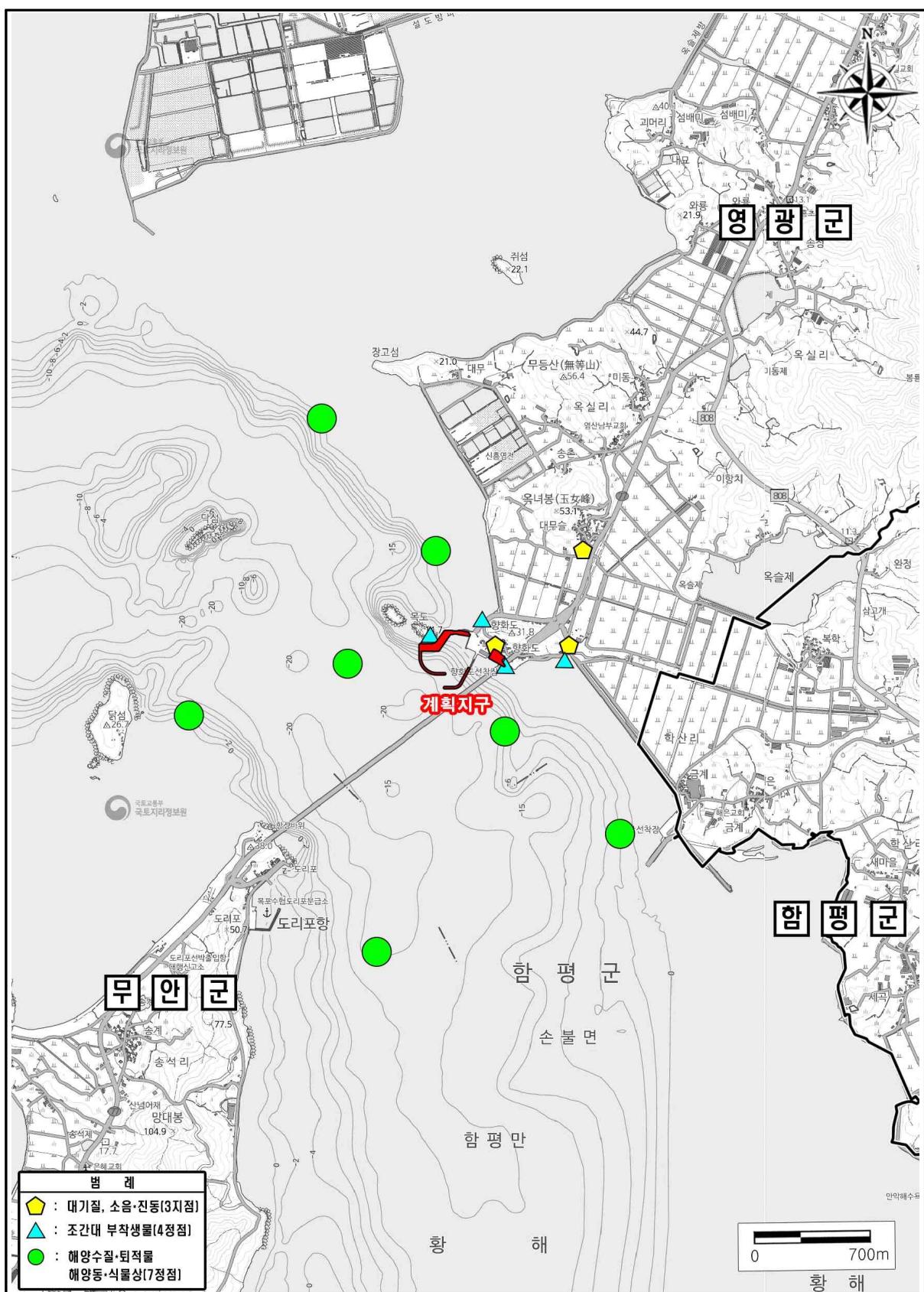
구분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범위 선정사유	평가방법	비고
생활 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반경 1.0km 소음·진동 반경 1.0km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 ○ 공사장비 가동 및 비산먼지 발생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질 현황 조사 ○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비산 먼지 및 NO ₂ 발생에 따른 영향 검토 ○ 주변 정온시설 파악 및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검토	○ 대기질(기상) ○ 소음·진동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영향 범위	○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파악	○ 지역개황 ○ 친환경적 지원순환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건설폐기물, 투입장비 가동에 의한 폐유 발생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처리방안 검토	○ 친환경적 지원순환 ○ 온실가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 및 운영시 인근 어업권 영향	○ 운영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 여부 검토	○ 토지이용 ○ 산업

4.3 항목별 현황조사계획

- 본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질, 해양수질 및 퇴적물, 소음·진동,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현황 조사계획 수립하였음

〈표 4.3-1〉 평가항목 조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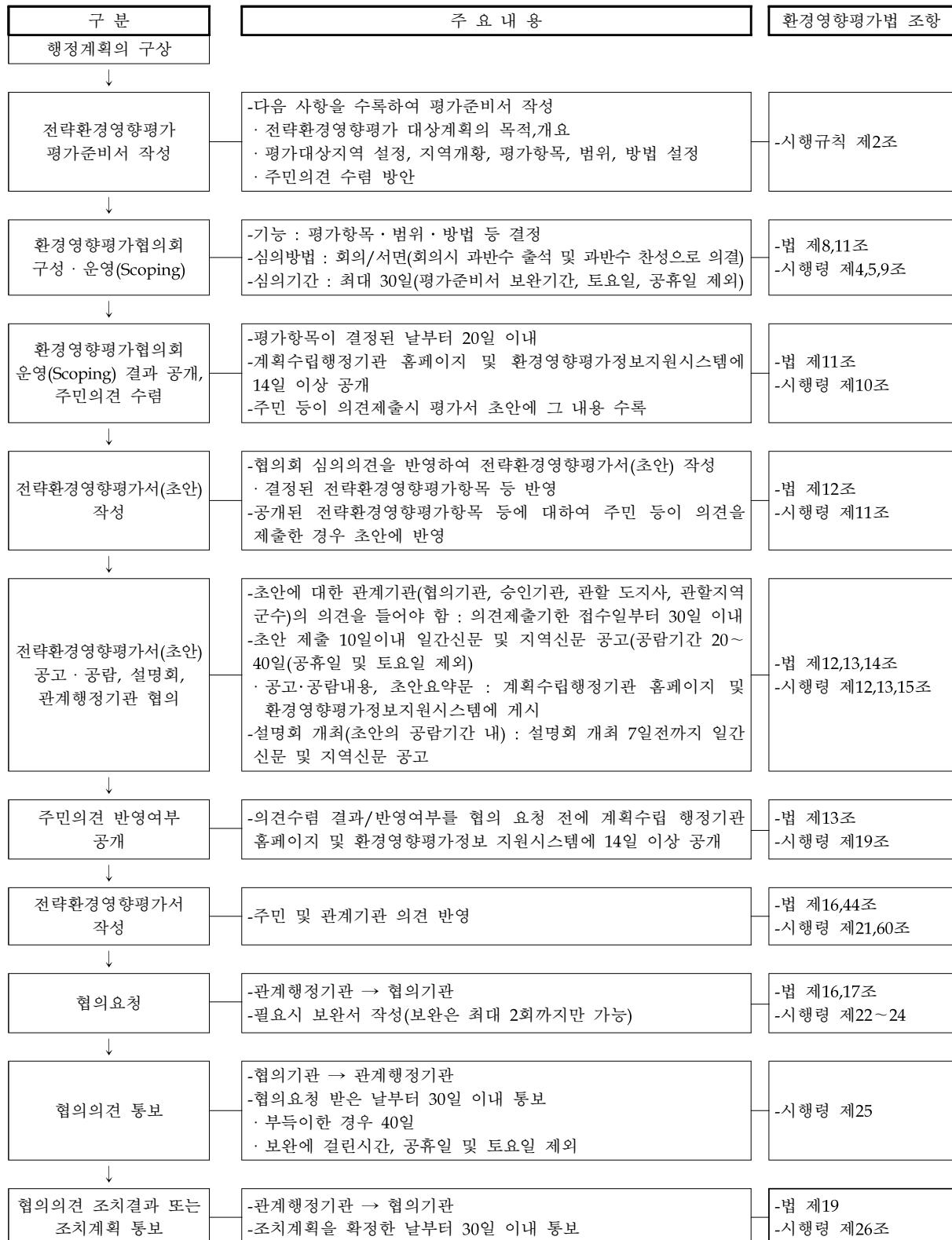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환경 질	대기질	○ PM-10, PM-2.5, NO ₂ , SO ₂ , CO, O ₃ , Pb, 벤젠 (총 8개 항목)	3지점	1회
	해양수질	○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 T-N, DIN, T-P, DIP, Cr ⁶⁺ , As, Cd, Pb, Zn, Cu, Hg, CN, Ni, PCB, 벤젠, 폐놀, 음이온계면활성제, 클로필-a, 용매 추출유분, 투명도, 저층DO(%) (총 29개 항목)	7정점 (표/저층)	
	해양 퇴적물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As, Cd, Cr, Cu, Hg, Ni, Pb, Zn, Fe, PCBs, PAHs, T-N, T-P, Li (총 20개 항목)	7정점	
	소음·진동	○ 소음·진동도(주간, 야간)	3지점	
자연 생태 환경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현황 ○ 식생보전등급 분포현황 ○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 주요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희귀종 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해양 동·식물상	○ 식물플랑크톤(표·저층, 기초생산력 포함) ○ 동물플랑크톤 ○ 조하대 저서생물 ○ 조간대 부착생물(해조류 포함) ○ 어란 및 자치어 ○ 해산어류	7정점 7정점 7정점 4정점 7정점 문현조사	



(그림 4.3-1) 환경조사 지점도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5.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5.2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은 같은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관련지자체) 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나.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1) 의견수렴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같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의견수렴 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고(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
 - 주민은 공람 후 7일 이내에 계획수립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공람기간 중 1회 실시(설명회 장소는 해당 지자체와 추후 협의)
 - 설명회 개최 7일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임

* 공청회 개최요건 :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 의견 수렴결과 공개 : 시행령 제19조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운영위원 : 승인기관(해양수산부), 협의기관(환경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11인

구 분	소속 / 부서	성 명	비 고
위 원장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김 ○ ○	제4조제1항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송 ○ ○	제4조제2항2호
	(주)건일	명 ○ ○	제4조제2항3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조 ○ ○	제4조제2항1호
	SK 에코플랜트	김 ○ ○	제4조제2항3의2호
위 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안 ○ ○	제4조제2항4의2호
	영광군 해양수산과	이 ○ ○ 최 ○ ○	제4조제2항4호
	향화도 어촌계	석 ○ ○	제4조제2항5호 가
	향화도 어촌계 영어조합	정 ○ ○	제4조제2항5호 나
	(주)세광종합기술단	김 ○ ○	제4조제2항5호 다

6.2 심의의견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송○○(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항화도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국가어항인 항화도항 내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등을 증축하여 항내 정온도 및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이용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임
- 사업 추진시 관련 행정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영향검토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계획을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들을 조사·비교하고 선정된 공법에 대한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항목별 예측 및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설명회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행정사항(승인기관, 사업자)

- 의견없음

2023. 1.

심의위원

7

- (주)건일 명○○(민간전문가)

환경 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항화도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전남 영광군 항화도항 일원에 외곽시설, 접안시설, 매립 및 준설 등의 건설 공사를 위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기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으로, 이해관계자(주민 및 어촌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특히,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의 규모, 지역 특성(어업권, 철새도래지, 간석지 등 분포)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확대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지구 주변지역으로 정온시설, 철새도래지, 어업권, 간석지 등이 분포하고 있는 바, 육상동식물상, 해양물리 항목의 평가 대상지역을 재조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이해관계자(주민 및 어촌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어항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성이 제고될 수 있는 토지이용 구상안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해 계획중인 외곽시설의 경우, 항내 해수교환율 저하 및 주변 간석지의 침퇴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대안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육상동식물상

- 계획지구 인근에 2개소의 철새도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영광-함평 해안 철새도래지에는 계획지구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육상동식물상(조류)의 평가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해양환경

-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해수유동변화, 침식 및 퇴적변화 등을 실시할 계획인 바, 해양환경의 평가범위는 계획지구 북측에 인접한 어업권을 포함하여 주변의 간석지 등에 미치는 영향(부유토사 확산, 침·퇴적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계획지구 인근의 이해관계자(주민 및 어업인)가 주민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장소는 지역 주민의 접근 및 공람이 용이한 장소를 추가로 선정하여야 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2. 12. 22.

심의위 ^'

→ →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조○○(협의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향화도항 및 당목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총괄의견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나 제출된 “평가준비서”에는 이와 같은 관련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 항목·범위 등에 대해 의견 없음.

* 공유수면 매립 규모의 세부내역, 조간대와 매립지역과의 이격거리 기준점 등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 기타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서면심의”

2022. 12. .

심의위원 : _____

- SK 에코플랜트 김○○(민간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향화도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향화도항은 철새도래지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접지역에는 다수의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 철새도래지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변경계획은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계획변경이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범위 확대
 - 조사지점은 철새도래지,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계획의 조정, 대안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 대기, 소음·진동 항목의 경우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추가 검토
 - 사업지구 인근 어업권 설정지역과 철새도래지의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항목의 공사·이용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지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 검토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적극적 주민의견 수렴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2022. 12. 22.

심의 위원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과 안○○(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향화도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 동 계획은 기존 향화도항 및 주변 해역에 외곽시설(방파제 455m, 호안 380m) 및 접안시설(물양장 305m)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공유수면 매립($12,535\text{m}^2$) 기본계획임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할 기법, 내용 등의 선정사유와 그 타당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 계획 부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지역으로 법정보호종 등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면밀한 영향예측 및 이에 대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어항규모 설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어항확대지정 필요성을 지리적·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어민수, 어선척수,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수산업 현황 등을 바탕으로 확대 설치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비교하여 대안 제시

3.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토지이용계획 상 기본시설, 기능시설, 편익시설 등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현황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사시기·지점·횟수를 충분하게 선정하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항목(해양동·식물상, 해양수·저질, 해양물리 등)을 중점 조사·평가하여야 함
 - 해양환경은 해양모델링(침식·퇴적변화 모델링, 오염물질 확산 예측 모델링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범위 설정 및 영향예측
 - 해양 동·식물상 현황조사 시 분류군 별로 분포와 서식·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왕성한 활동시기에 현장조사를 실시 및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계획부지 내 해양지형변화를 예측하고, 공사시 발생하는 준설토 등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어항부지 추가조성 및 시설 설치를 위한 매립공사 시 토량공급계획, 지반 안정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해양퇴적물 준설토가 실시될 경우, 악취 항목 추가 영향예측
 - 준설토에 의한 준설토 처리계획(준설토 적치장 설치·운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동 사업계획으로 주변 마을어업 등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계획이 향후 개발사업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에 많은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022년 12월

심의위원 : 김우현, 김민수, 김기현

- 영광군 해양수산과 이○○(지자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향화도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매립 예정지역 주민의 어업현황, 해양환경 현황 등을 파악하고 매립으로 인한 해양의 영향 및 주변 어업인들의 어업권 피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의견 없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어업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설명자료 배포 및 홍보가 필요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

□ 행정사항(승인기관, 사업자)

-

2022. 12.

심의위원



- 영광군 해양수산과 죄○○(지자체)

【별첨2】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결과 통보서(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향화도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 본 사업의 주변지역에 대한 어업권 현황, 해양환경 현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어업권피해, 해양환경영향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등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민원사항(어업피해, 비산먼지, 소음 등) 대책을 수립하여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지역의 지역주민, 어촌계, 수협, 영광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없음.

행정사항(승인기관, 사업자)

-

2022. 12. 19.

심의우

- 향화도 어촌계 석○○(주민대표)

<p>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향화도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화도 주변 지역의 어업권 지역과 어업권 개체를 증가시킬 위험을 가지고 주거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주거설명회 성원은 향화로 주민으로 한 정체여행 <p><input type="checkbox"/> 실의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지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지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지 없음 ○ 이 기지 없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이전 기자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로 주거설명회를 개최하여 수렴하도록 주거설명회가 개최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증분히 수용화로 주거설명회가 개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지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지 없음 <p><input type="checkbox"/> 행정사항(승인기관, 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style="text-align: right;">2022. 2. 30.</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p> <p style="text-align: right;">(날짜)</p>		
--	--	--

- 향화도 어촌계 영어조합 정○○(민간전문가)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향화도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p>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어업지역 개발조사가 어에끼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하고, 시설 강화로 주거를 한정화 <i>주거시설화를 최우선</i> <p><input type="checkbox"/> 심의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여기 없음</i>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여기 없음</i>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여기 없음</i>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환경영향평가 개별으로 인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시급히 고려하여야 한다.</i>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여기 없음</i>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여기 없음</i> <p><input type="checkbox"/> 행정사항(승인기관, 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style="text-align: center;">2022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심</p> 	
--	--	--

- (주)세광종합기술단 김○○(해양 관련 전문가)

[첨부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 안건명 : 항화도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최근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항화도항은 방파제와 계류시설을 증축하여 항내정온도 및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임. 입지적으로 수산지원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환경보전해역 내에 위치하며, 습지보호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공사로 인한 부유사 영향 및 저감대책, 항내 해수교환율 변화로 인한 수질악화 요인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심의의견서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2. 환경보전목표 설정

- 본 사업은 해상공사를 통한 방파제와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해양수질 영향이 우려되므로 해역별 수질 등급에 의거 한 해양환경기준 관리목표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대안의 설정

- 대안의 설정은 방파제 위치와 계류시설을 이용하여 검토되었으며, 주로 경제성·시공성을 비교·평가하였으나, 해양환경 측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의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방파제 연장 및 상부 부지 활용계획 등에 대한 비교·평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입지 상 해양보호생물인 잘피류 서식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에 이의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에 이의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사업 관련하여 환경관련 기타 절차(해양공간적합성협의 및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 및 수행여부를 검토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법 상 절차(초안의견 수렴시 관련 전문가 의견 필요)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2022. 12. 1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 1 2 3 4 5 6 7 8 9 10